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도로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점용물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법인(단체)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.
- 나.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

3. 개정근거

- 도로법 제83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) 및 제65조(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 타

- 가. 입법예고(2009.03.05~2009.03.25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03.26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점용물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
1.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
3.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
4.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물의 철거를 기한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점용물</u> <u>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물을 철거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</u> <u>2.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</u> <u>3.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</u> <u>4.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</u> <u>하는 경우</u> <p><u>②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</u> <u>점용물의 철거를 기한 내에 자진하</u> <u>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「행정대집</u> <u>행법」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</u> <u>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</u> <u>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</u> <u>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</u> <u>철거전문 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</u> <u>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하도록 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구청장은 점용물의 관리 또는 철</u> <u>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</u> <u>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</u> <u>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</u> <u>탁할 수 있다.</u></p>